

# 국제학사 사생수칙

2015. 2. 1



# 국제학사 사생수칙

제 1 조(목적) 본 수칙은 연성대학교 국제학사 사생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써 규칙적인 공동생활, 교양의 함양 및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근거) 본 수칙은 연성대학교 국제학사 운영규정 제5조에 근거한다.

제 3 조(사생의 의무) 사생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생수칙 및 국제학사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3. 화재예방, 도난방지 등 국제학사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4. 생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함), 사감의 지도와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4 조(통보의무)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장 또는 사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제학사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화재, 풍수해, 도난, 응급환자, 기타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3. 국제학사 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 5 조(기숙사 생활) 생활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국제학사는 06:00에 개방하고 24:00에 폐문하며, 폐문시간 이후 출입을 금한다.
2. 외부인의 출입 및 숙박은 허가하지 않는다.
3. 사생은 항상 바른 예절로 직원 및 선배와 동료들 대해야 하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사생은 출입카드 관리 등 도난 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 책임을 진다. 도난 사고에 대하여 국제학사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 조(출입카드 및 호실 열쇠) 관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

1. 출입카드 및 열쇠는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외출 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생은 출입카드 및 호실 열쇠 분실 시 운영사무실에서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별도의 재발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사생은 출입카드 및 열쇠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퇴사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 7 조(호실배정)

- ① 호실 배정은 본과(내·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의 기간을 구분하여 배정된 호실은 사생 임의로 변경을 금한다.
- ② 호실 배정 방법은 관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 ③ 국제학사 사정으로 인해 룸메이트를 지정할 수 없다.

#### 제 8 조(입사 및 퇴사)

- ① 사생의 국제학사 정기 입사, 퇴사에 관한 사항은 매학기별로 관장이 결정한다.
- ② 사생은 입사 시 입사서약서를 제출하고, 호실 물품을 확인하고 물품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③ 국제학사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사하는 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하며, 중도퇴사를 희망하는 자는 퇴사 7일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장은 해당 사생의 방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과 호실 하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사조치 하며, 또한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 조치한다.
- ⑤ 사생은 퇴사 시 호실 하자 및 호실 물품의 확인을 받고 퇴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⑥ 시설보증금은 호실 비품 및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정산 환불한다.
- ⑦ 중도 입·퇴사에 관한 세부 규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9 조(인원점검 및 점호) 인원 점검 및 점호는 층장에 의해 취해짐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 점검 및 점호는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1. 주 1회 지정일 23:00에 실시하며 각자의 호실에서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국제학사 사감(이하 “사감”이라 함)의 권한으로

실시하며, 점검내용은 인원점검 및 환경정리, 일일 지시사항 전달, 비품 및 시설물 파손상태 점검 등을 포함한다.

3. 인원점검 및 점호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당일 15:00까지 운영사무실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4. 필요시 사생이 부재중인 호실에 대하여도 점검할 수 있다.

제 10 조(외출 및 외박) 외출 후 귀사 시각은 23:00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사무실로 사전에 연락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외박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

1. 외출 및 외박은 운영사무실에 비치된 외박 대장에 기재한 후 실시한다.
2. 특별한 사유나 허가 없이 1주 이상 무단 외박자는 퇴사 조치한다.

제 11 조(변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은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2. 시설 및 기물 훼손
3. 비품, 일반용품 훼손 및 분실

제 12 조(게시물) 모든 게시물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 13 조(금지행위) 사생은 국제학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에 대한 숙박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국제학사 내에서의 흡연, 음주, 폭행 및 도박 행위
3. 전열기, 취사기구, 인화물질,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
4. 조리실이외 장소에서 음식 조리 행위
5. 국제학사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위치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6. 낙서,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7. 사감의 허가 없이 이성이 거주하는 층을 방문하는 행위
8. 애완용 동물의 사육 또는 영리 목적의 상행위
9. 국제학사 내에서 소음 발생 행위
10. 기타 사생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 14 조 (상·벌점 및 징계)

- ① 관장은 본 수칙 제13조의 각 호를 위반한 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벌점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벌점기준에 의한 징계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강제퇴사 조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장은 규칙의 위반 정도가 학교의 질서를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생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지도 문자 발송하며, 지도교수에게는 지도 메일 발송한다.
- ④ 국제학사 운영규정 제 21 조에 해당하는 자, 강제퇴사항목에 해당하거나 벌점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는 차후 입사를 불허한다.
- ⑤ 연간 사생의 경우 1년 단위로 기록하며 학기 사생의 경우 차후 입사 시 벌점 기록이 있을 경우 상쇄 후 입사가 가능하다.

제 15 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별표1> 상·벌점 기준표

상점 내용	상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사 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선양시킨 자</li> <li>• 관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li> <li>•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이 된 자</li> </ul>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행사 참여)</li> </ul>	1점

벌점 내용	벌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칙에 의거 중징계를 받은 경우</li> <li>•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에 대한 숙박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li> <li>• 국제학사 내에서 본인과 타인의 안전(정신적, 신체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단체 집합 포함)</li> <li>• 도박, 폭행, 절도, 파렴치한 행동 등 단체생활 부적격 행위</li> <li>•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li> <li>• 남여 이성 호실의 출입 및 숙박 행위</li> <li>• 국제학사 내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손해액 전액 변상)</li> <li>• 관장, 사감 및 관계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또는 반항하는 행위</li> <li>• 벌점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인 자</li> <li>• 기타 관장이 퇴사를 명한 자</li> </ul>	강제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정된 호실을 사생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li> <li>• 타인의 취침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호실 무단이동 행위 포함)</li> <li>• 출입카드 및 열쇠 대여 행위</li> <li>• 국제학사 내 흡연,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li> <li>• 외부인을 대동 입실하는 행위</li> <li>•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li> <li>• 국제학사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위치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손·망실액 전액 변상)</li> <li>• 점호를 받고 무단으로 국제학사를 이탈하는 행위</li> <li>• 호실 내 취사기구 반입 및 호실에서 음식 조리하는 행위</li> </ul>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단외박 행위</li> <li>•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li> <li>•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과도한 애정행위, 소란 및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등)</li> <li>• 만취상태로 국제학사에 들어오는 행위</li> <li>•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또는 개봉하는 행위(택배물 포함)</li> <li>• 배달음식을 호실내로 배달 요청하거나 취식하는 행위</li> <li>• 애완용 동물의 사육 행위</li> <li>• 폭언, 근거 없는 비방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인터넷 포함)</li> <li>• 계단, 난간 등에서 위험한 행위</li> <li>• 퇴사 시 호실 청소와 정리정돈 불이행</li> </ul>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단으로 공식행사에 불참하는 행위 (오리엔테이션, 소방훈련 등)</li> <li>• 점호 불참, 귀사시간이 지연 및 통제시간 위반 행위</li> <li>• 조리실 및 공용 공간 사용 후 청소와 정리정돈 불이행</li> <li>•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li> <li>• 공용 공간에 대하여 이용제한시간 이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li> </ul>	2점

<p>(글로벌 라운지, 피트니스룸, 세탁실, 컴퓨터실, DVD실, 공용샤워실, 에어로빅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시물 훼손, 낙서,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li> <li>• 호실 청소상태 불량</li> <li>• 기타 사생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국제학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호실 내 신발 신고 다니는 행위, 침이나 가래 뱉는 행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문을 개방하고 장시간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등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li> </ul>	1점

###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